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35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1. 2. 5.

4. 회부일자 : 2021. 2. 9.

Ⅱ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용어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 심의·조정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상위법령 제명 및 관련 용어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2조, 제6조, 제8조)

2. 위원회 회의 시 관계 공무원, 전문가 외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12조)

3.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실효성 부재로 삭제함(안 제17조)
   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25조(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)가 삭제됨.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의안 〔별첨2〕 참고).

3. 협　　의 : 감사관, 정책안전기획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 완료

4. 기　　타 :

○ 신·구조문대비표 : 의안 〔별첨 1〕 참고.

○ 입법예고(2020. 11. 9. ~ 11. 30.) : 의견 없음.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○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의안 〔별첨 3〕 참고).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의안 〔별첨 4〕 참고).

○ 학생인권영향평가 :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의안 〔별첨 5〕 참고).

○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결과요약서(의안 〔별첨 6〕 참고).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35호로 제출되어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」(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)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정보화정책심의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에 대해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와의 입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입법으로서,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아래의 〔표〕와 같이 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용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]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내역

구분	법률 개정 전	법률 개정 후	조례안 개정사항
제명	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	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	안 제2조 반영
법률 용어	국가정보화 기본계획	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	안 제6조 반영
	인터넷 중독	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	
	지적재산권	지식재산권	
	정보기술	지능정보기술	안 제8조 반영
지식정보관리	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	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 폐지	안 제17조 삭제

나. 안 제12조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12조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외에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보장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이와 관련해서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는 교육감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'학생, 학부모,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'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[1)]

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 제20조는[2)] 학생이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, 동 조례안 제12조가 '학생 등 이해당사자'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 및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규정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(의안 〔별첨5〕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참고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--

1) 제4조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학생, 학부모,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(이하 "교육관계자"라 한다)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
2.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
3.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

2)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
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⑤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

지능정보화 기본법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44호, 2020. 6. 9., 전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보”란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.
2. “정보화”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정보통신”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, 이에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.
4. “지능정보기술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.

가.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·추론·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

나. 데이터(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)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·분석·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

다.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·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

라.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

마. 무선 또는 유·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

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

5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지능정보사회”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·경제, 사회·문화,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.
7. “지능정보서비스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가.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

나.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

다.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

8. “정보통신망”이란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9. “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·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[이하 “초연결”(超連結)이라 한다]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
10. “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”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·설비,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.
11. “정보문화”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·가치관·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12. “지능정보사회윤리”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,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·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

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.

13. “정보격차”란 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, 그와 관련된 기기·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.
14. “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”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.
15. “정보보호”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·변조·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·기술적 수단(이하 “정보보호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16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기관 및 단체

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“전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·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2. 공공·민간·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
3.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
4.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,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,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·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
5. 정보의 공동활용·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
6.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·제도 개선
7.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·홍보·인력양성 및 국제협력
8.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
9. 정보보호, 정보격차 해소,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,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
10.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·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
11.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·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